

이용현황이도로인잔여지:기각

○(판단)○○부의 잔여지○○○○군○○면○○리522-1전35㎡(전체166㎡,편입131㎡,계획관리지역),같은 리579-8전51㎡(전체191㎡,편입140㎡,계획관리지역),같은 리539-2전378㎡(전체677㎡,편입299㎡,계획관리지역)는토지의 형상이 삼각형 모양의 부정형이나2008년 이전부터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(국도)로 이용되고 있으며이 건 공익사업 이후에도 이용상황에 변동이 없어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